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신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332
----------	------

발의연월일 : 2017. 6. 12.

발의자 : 오신환 · 유민봉 · 여상규

강훈식 · 김현아 · 정우택

임이자 · 유승민 · 유의동

하태경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탁금 수령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거나 공탁자가 공탁 관계를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음 등을 이유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탁금의 수령과 회수의 권리를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도록 하고 있음.

2015년 미수령 공탁금은 7조 3,061억원으로 매년 납입액이 증가함에 따라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더욱이 시효로 소멸되어 국고에 귀속되는 공탁금 또한 2013년 598억원, 2014년 629억원, 2015년 818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이에 공탁금 수령 또는 회수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소멸시효 완성 전에 안내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고에 귀속되는 공탁금을 감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신설).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원행정처장은 제3항에 따른 시효가 완성하기 전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공탁물의 수령 또는 회수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알려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공탁물의 수령·회수) ① ~ ③ (생 략) <u><신 설></u>	제9조(공탁물의 수령·회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원행정처장은 제3항에 따 른 시효가 완성하기 전에 대법 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공탁물의 수령 또는 회수할 수 있는 권리 등 을 알려야 한다.